

의안번호	2218976
의 퇴 인	조은희의원
회 답 일	2026.7.3.
추 계 번호	26B264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의2 (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제1항) 1.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반환되지 아니한 임차보증금의 선지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선매입 지원 3. 그 밖에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9조의2(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반환되지 않은 임차보증금의 선지원 및 지방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선매입 지원 등이 시행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임차보증금 선지원 또는 지방공사 소유 임대주택 선매입 지원의 기

준, 범위, 지원단가, 지원기간, 회수조건, 손실보전 방식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기간 등은 향후 기금운용계획을 통하여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다만, 현행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중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신탁사기 피해주택매입 및 피해자 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대위변제사업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어 참고할 수 있음

[표 1] 주택도시기금 임대 관련 주요 사업 현황: 2025~2026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년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319,894	6,378,752
전세임대(융자)	5,434,872	5,264,355
통합공공임대(융자)	1,481,708	823,570
행복주택(융자)	314,009	189,078
공공임대(융자)	603,970	160,855
국민임대(융자)	94,297	141,838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표 2] 전세사기피해자 다가구매입임대사업(융자·출자) 2024~2026년

(단위: 백만원, 목표매입 호수)

	2024	2025	2026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전세피해)	375,000 (5,000호)	637,500 (7,500호)	637,500 (7,500호)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전세피해)	337,500 (5,000호)	573,750 (7,500호)	573,750 (7,500호)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표 3]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지원(주택도시기금): 2024~2025년

사업별지원액 (피해자전용)		2024 지원액 (지원건수)	2025.10 지원액 (지원건수)
디딤돌대출(HUG)		102,728 (536건)	108,530 (510건)
보증자리론(HF)		93,300 (352건)	24,300 (88건)
버팀목대출(HUG)	저리	48,648 (364건)	40,247 (267건)
	대환	241,637 (2,049건)	126,734 (1,274건)
	무이자	5,582 (54건)	3,365 (25건)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III.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